

편입생 학점인정 운영 규정(안)

제정 2026.02.09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24조의1(학점인정)에 따라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)

-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.
- ② 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1. 국내·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
 2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
 3.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

제3조 (학점인정 범위)

- ① 편입생의 학점인정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2학년 편입생 : 38학점 이내
 2. 3학년 편입생 : 75학점 이내
- ② 교양 학점은 해당 학년의 졸업기준 학점 범위 이내에서 인정하며, 전공 학점은 소속 계열(학과)의 교육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4조 (학점인정 절차)

- ① 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식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지도교수 및 계열(학과)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.
 1.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[별지서식 제1호]
 2.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
- ② 교무처는 학점인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심의한다.
- ③ 교무처는 학점인정 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에게 안내한다.

제5조 (학점인정 처리)

- ① 편입생 학점인정은 교과목 단위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총 인정학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성적 처리는 「전적대학 학점인정」으로 기재하며, 총 인정학점을 명시한다.

제6조 (기타사항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종전 규정의 폐지)

이 규정은 종전의 학점인정 규정을 「선행학습 경험 학점인정(RPL) 운영 규정」 과 「편입생 학점인정 운영 규정」 으로 분리·제정한 것으로,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점인정 규정은 폐지한다.

